

#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Improvement Plan of Special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박한호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an-Ho Park(palyo@hanmail.net)

### 요약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시험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채용 | 지역사회 경찰활동 | 시험제도 | 특별채용 | 경찰시험과목 |

### Abstract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licated, using of special recruitment gets more important and professionalism of policing also gets significant. Related to this, as in particular, modern police orients a same paradigm with community policing,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an be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in a time that the understanding to policing of human resources of police is needed. Therefore, this article searched the plan to improve post-recruitment system for actively using human resources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se plans are:

First,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opportunity by adjusting examination date of open & special recruitments; Second, to suggest the extension of examination courses through additional organization of optional courses; Finally, to suggest the increase of recruiting numbers in special recruitment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 keyword : | Recruitment | Community Policing | Examination System | Special Recruitment | Police Examination Subjects |

## I. 서론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 지면서 범죄문제를 다루는 경찰인력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범죄수법을 넘어 첨단화 되고 지능화되는 범죄를 다루기 위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현대 경찰은 주 임무인 범죄통제의 역할을 포함해 서비스 지향적 경찰활동을 지향함에 따라 오늘날 경찰의 전문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1].

경찰은 현대사회에서의 범죄와 경찰활동상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제도 운영해 왔으며, 현재 11가지의 구분으로 특별채용제도를 통하여 전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2].

이 중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현대 경찰활동상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4년제 혹은 경찰직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직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경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활동에 대한 철학의 이해가 깊고, 경찰인(警察人)으로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함양한 학생들이 신입순경으로 입직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1960년대 특별채용제도를 통해 경사계급으로 처음 실시해 오다 경장계급으로 한 계급 낮춰 특채를 시행해왔다. 2000년 이후 많은 수의 경찰행정학과가 각 대학마다 설치되면서 오늘날 순경계급으로 특채를 하여 우수인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필기시험과목을 영어(英語)대신 행정법(行政法)으로 편성하여 일반순경공채시험과 시험과목을 달리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우수인력이 경찰직에 입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녀비율이 순경공개채용보다 균등하게 배정함으로써 특채를 시행하고 있어 양성평등적 시험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경찰행정과 관련한 관련전공 및 유사학과의 수가 200여개가 넘는데도 특별채용의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시험일자가 순경공개채용과 동일하여 시험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과목의 편성

이 일반 순경공개채용과 달라 시험기회의 제약이 사실상 존재한다[3].

특별채용의 취지가 전문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의 시험제도와 검증제도를 거침으로써 입직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경공개채용의 시험과목에 선택과목편성을 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전문 인력인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을 활성화 하여 기회의 균등과 입직 수준의 평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활용을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의 특별채용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채용시험제도와 과목조정 그리고 시험기회의 조정을 통하여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거나 설문을 통하여 인식차이를 설명하진 않는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찰행정학과 출신자의 입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를 경찰조직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이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특별채용을 통한 우수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것으로서 공직 시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본 논문의 취지가 경찰행정학과 출신자의 시험제한에 대한 기회제공 문제해결과 적극적 전문인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밝힌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제도의 의의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제도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에서 제2항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

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적 명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4].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직의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1960년 이후 시행된 제도이다. 매년 100여명의 경찰행정학과 특채자가 선발되어 현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 2. 경찰행정학과 특채 입직제도 개선의 필요성

우리나라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중 경찰과 관련한 학문을 다루는 학과는 유사학과를 포함하여 약 20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학, 범죄학, 형사정책, 교정학 등 전공과목위주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학 내 대부분의 경찰행정학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 있어 경찰행정학과와의 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경찰행정학과와의 인기가 말해주듯 공직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으며, 특히 경찰직은 높은 단일 공무원조직 중 군(軍)을 제외하고 가장 인력이 많이 필요한 조직 중 하나로 매년 천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는 직종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국가를 대신하여 최일선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행정집행자로서 치안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 사명감이 높은 직종으로 여타 공직보다 지속적으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직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다른 공직보다 높은 청렴성, 민첩성, 사명감, 정의감을 요구하고,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 지고 범죄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까지 개입해야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경찰조직의 철학을 이해하고 스스로 경찰의 철학적 정체성을 내재화해야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현대경찰이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집행자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함에 따라 범죄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공직보다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경찰의 전문적 지식은 다년간의 고도화된 지식을 내재화해야할 뿐 아니라 직접 시민들과 상호작용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수행해야하는 현대경찰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상황에 맞는 경찰철학을 적용해야하는 능력은 전문지식과 함께 경찰정신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 시부터 경찰직을 희망하고 경찰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한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직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braham H. Maslow가 정립한 욕구단계이론(欲求段階理論: need hierarchy theory or hierarchy of needs theory)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5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인간의 원초적 본능의 충족이후 이상적 실현을 위한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바 있다[6].

이와 관련해 인간행위의 단계를 결정짓는 행위이론적 관점에서 레윈(K. Lewin)과 톨먼(E. Tolman)은 인간의 본능에 좌우되는 이론들을 부정하고 인간은 이성과 사고를 지닌 존재로, 미래와 현재에 대하여 의식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행동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였다[7].

이와 같은 이론과 관련해 본다면 대학은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라는 점과 대학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성인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선택하여 장차 경찰직을 희망하며 4년 이상 준비한다는 점에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경찰의 자질 중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성을 갖춘 자를 입직시키기 위해 면접비중을 높였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경찰직을 희망하며 입직준비를 한 경찰행정학과 출신은 다른 지원자보다 높은 인성을 지녔을 확률이 크다.

### III. 현재 경찰공무원 입직구분과 제도현황

경찰공무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형태로 구성할 수는 없다. 더욱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복잡다단성은 이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하에서는 경찰직의 입직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현재 경찰공무원 입직제도

경찰직에 입직하는 경로는 다른 공무원보다 폐쇄적이지만 사실상 다양하다. 크게 9급 순경채용제도, 7급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제도, 5급 특별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9급 순경공개채용과 별도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제도를 운영되고 있다.

순경채용제도는 크게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인적성 평가 포함)의 단계를 거치며, 1차 필기시험 과목은 경찰학개론, 영어, 한국어사, 형법, 형사소송법을 입직시험으로 정하고 있다(2013.2월 시험 기준). 이와 관련해 2014년부터 고졸자 채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어, 과학, 수학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 편성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 2. 경찰특별채용 입직제도

공직충원 통로의 다양화와 공개채용으로 채용하기 힘든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임용체제에 신속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찰수요에 따른 필요인력 충원이 가능한 경찰특별채용의 경우 경찰행정학과를 포함해 고시합격자, 항공요원,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요원, 총포화약, 의사요원, 교통공학, 경찰악대, 정보통신, 전의경 특채 등 총 11개의 구분에 의해 선발되고 있다[8].

물론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도 일반공개채용자와 동일하게 동등한 응시자격을 갖춰야 한다.

표 1. 특채선발 구분과 해당계급 및 공고일자[9]

| 구분      | 계급     | 공고       |
|---------|--------|----------|
| 고시합격자   | 경정     | 상반기 실시   |
| 항공요원    | 경위, 경장 | -        |
| 경찰특공대   | 순경, 경장 | -        |
| 사이버수사요원 | 경장     | -        |
| 총포화약    | 순경     | -        |
| 외사요원    | 순경     | 하반기 실시   |
| 교통공학    | 순경     | -        |
| 경찰악대    | 순경     | -        |
| 정보통신    | 순경, 경장 | 상반기, 하반기 |
| 경찰행정학과  | 순경     | 공채시 선발   |
| 전의경 특채  | 순경     | 공채시 선발   |

표 2. 순경직응시자격요건(13년 공고 기준)[10]

| 구분   | 응시 자격 요건  |
|------|---|
| 연령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2. 1. 1~1995. 12. 31. 출생자)<br>· ※ 재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병역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3. 6. 2까지 전역 예정자)<br>·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 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체조건 | ·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 · 시력 :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 · 색신 :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 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 ·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
|      | ·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이외에 경찰행정학과 특채를 응시하려면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별표 1의2의 소정의 전공과목이수자를 응시자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표 3.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 제4항제2호 신설 2011.2.9.)[12]

| 인정 과목   |
|---|
| 체포술(무도·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법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

본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과목으로 매우 전문성을 가지며, 경찰직 업무에 매우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특채자로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 3. 시험과목과 선발일정

일반 순경채용시험과목은 한국어,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2013년 현재)이며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 I,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총 5과목을 시험보고 있다.

또한 최근 개정을 통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규정(2012. 5. 31, 2010헌마278)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완화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警科)를 해양경찰의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 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하면서 선택과목 간에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점수제를 도입하였다[13]. 또한 필기시험의 일정은 순경공개채용일자와 특별채용일자가 동일하게 치뤄 진다.

표 3. 순경 공채와 특채 비교

| 구분                   | 시험과목<br>(객관식)                     | 선택                      | 공통 응시<br>자격  | 응시<br>자격   |
|----------------------|-----------------------------------|-------------------------|--|--|
| 순경<br>공채             | 한국사, 영어,<br>형법, 형사소송법,<br>경찰학개론   | 국어,<br>수학,<br>사회,<br>과학 | 18세 이상 40<br>세이하   |  |
| 경찰<br>행정<br>학과<br>특채 | 경찰학개론,<br>수사 I, 행정법,<br>형법, 형사소송법 | 없음.                     | 공무원임용령<br>제33조, 경찰<br>공무원 제7조 2<br>항에 해당하지<br>않는자<br>1중보통 운전면<br>허 소지자<br>남자의 경우 군<br>필자 | 2년제 이상 대학의<br>경찰행정 관련 학과<br>또는 해양경찰 관련<br>학과를 졸업하거나 4<br>년제 대학의 경찰행<br>정 관련학과 또는 해<br>양경찰 관련학과에<br>재학 중이거나 재학<br>했던 사람으로서 경<br>찰행정학전공 이수<br>인정될 수 있는 과목<br>을 45학점 이수한자 |

### 4. 응시인원과 선발인원

응시인원과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남

자 70명, 여자 30명을 선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남자 70명, 여자 30명을 선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남자 56명, 여자 24명을 선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남자 56명, 여자 24명을 선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남자 61명, 여자 59명을 선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 년도별로 남녀 구분에 있어 점차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한 비율을 이룸에 따라 성평등적 입직구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며, 점차 인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경찰행정학과 특채 필기시험 모집현황

(단위:명, %)[14]

| 모집<br>년도 | 남자            | 여자           | 총원              | 시행<br>횟수 |
|----------|---------------|--------------|-----------------|----------|
| 2008     | 70<br>(70%)   | 30<br>(30%)  | 100<br>(100.0%) | 1        |
| 2009     | 70<br>(70%)   | 30<br>(30%)  | 100<br>(100.0%) | 1        |
| 2010     | 56<br>(70%)   | 24<br>(30%)  | 80<br>(100.0%)  | 1        |
| 2011     | 56<br>(70%)   | 24<br>(30%)  | 80<br>(100.0%)  | 1        |
| 2012     | 61<br>(50.8%) | 59<br>(49.1) | 120<br>(100.0%) | 1        |

## IV. 경찰행정학과 출신활용을 위한 입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현 경찰행정학과 특채제도의 문제점

#### 1.1 시험기회의 제한

순경공채의 경우 평균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입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모집인력 수와 관련해서는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경공개채용일자와 특채시험일자가 중복되어 특채시험준비생인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는 공개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 중 한 개의 시험에만 응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특채유사로 인한 기회비용적 시험기회의 제한이 생기는 실정이다.

#### 1.2 시험과목의 한정

순경공개채용시험의 경우 한국어, 영어, 형법, 형사

소송법, 경찰학개론과 앞으로 시행될 선택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시행으로 폭넓은 과목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경우 경찰학개론, 수사 I,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선택과목 없이 시험과목이 정해져 있으며, 공개채용시험과 과목이 일부 상이하여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모두 응시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적인 과목의 학습이 더 필요한 실정으로서 사실상 시험과목한정성에 따른 선택의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

### 1.3 선발인력의 비율

공개채용에 비하여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는 매우 적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에 경찰행정학과와 그 유사학과를 포함한 집계 약 200개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잠재적으로 경찰직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특별채용 인력모집 규모로 한정성을 가진다.

전문 인력양성과 조직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공채 인력의 약 5%수준의 특채의 한정된 모집인원은 절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매우 적은 비율이다.

## 2. 경찰행정학과 특채 활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방안

### 1.1 시험일자의 중복 해소를 통한 채용시험기회 확대

순경공채시험은 1년에 정기적으로 평균 2회를 실시하고 인력의 수요와 사회여건, 정부의 정책, 예산 등 제반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경우 평균 당해 1회만 실시하고 있고 그 시험일이 순경공개채용일과 동일하여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개채용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공개채용의 일자와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일자를 상이하게 조정하여 더 많은 입직시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1.2 과목선택 확대 활용을 통한 입직제도 개선

공채의 시험과목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과 앞으로 시행될 선택과목 국어, 수

학, 사회, 과학의 시행으로 폭넓은 과목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특채의 경우 경찰학개론, 수사 I,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선택과목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채 시험실시 상이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시험과목의 부담을 해소시켜야한다.

즉,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공통과목인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선택과목 행정법과 수사를 편성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경찰공개채용 선택과목 변경안

|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비고   |
|------------|------------------|-------------------------------|--|
| 일반 응시자     | 한국사, 영어          | 전과 동일                         |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는 영어대신 행정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한국사 대신 수사로 과목을 대체할 수 있음. |
| 경찰행정학과 출신자 |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영어와 행정법 중 택1<br>-수사와 국사 중 택1 | 과목의 점수는 특채시험 일자에 따라 점수가 반영될 수 있음.                          |

또한 공개채용보다 특채의 시험일자를 앞당겨 행정법과 수사의 시험점수를 공개채용에서 반영함으로써 시험출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1.3 특채비율 확대에 따른 우수자원의 확보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인력은 매년 100여명 수준으로 전문 인력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경찰모집 인력의 50%를 경찰행정학과 출신으로 선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교육과 중복교육을 감소시킴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미국에서 과생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함께 경제 인구를 매우 감소시켰다. 이러한 경제여파는 당시 직장을 다니던 구성원들의 구조조정을 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졌다. 평생직이라는 인식이 높은 경찰직은 이러한 공무원을 대표하는 직종 중 하나로 경찰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경찰행정학과의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되면서 경찰직을 희망하는 우수인재를 또한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우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경찰행정특채제도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매년 선발하고 있다. 일반 공채시험과목과 달리 경찰행정학과에서 배운 과목을 위주로 시험과목을 조정하여 특별채용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직을 희망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경찰행정학전공학생들은 사실상 제한된 특별채용의 시험시행으로 보다 적극적인 채용이 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4년 이상 경찰관련 철학과 지식을 전공한 우수한 인재가 한정된 시험의 기회와 극소수의 모집인원 제한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입직에 대한 시험제도의 제한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경공개채용 시험날짜와 특별채용시험날짜가 같아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해야하는 시험일자를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순경공개채용의 시험과목에 추가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여 시험과목의 선택범위를 넓힘으로써 과목에 대한 제한성을 해소하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모집인원 확대를 제시하여 보다 많은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이 조직 내 입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참고 문헌

[1] 한상암, 김명대, 박한호, “경찰공무원 치안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행태 저해요인에 관한 논의-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권, pp.347-350, 2012.  
 [2] <http://gosi.police.go.kr/>  
 [3] 임준태, “바람직한 경찰인사행정의 모색-전문성 향상과 개방형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Vol.7 No.3, p.27, 2008.

[4] 이황우, 김진혁, 임창호, 경찰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pp.109-112, 2012.  
 [5] 최응렬,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5호, pp.191-195, 2003.  
 [6] 이황우, 경찰학개론, 제4판, 서울: 법문사, p.166, 2005.  
 [7] 배정훈, 동기부여론, 서울: 형설출판사, p.138, 2006.  
 [8] <http://gosi.police.go.kr/>  
 [9] <http://gosi.police.go.kr/>  
 [10] <http://www.police.go.kr/>  
 [11] <http://www.moleg.go.kr/>  
 [12] <http://www.moleg.go.kr/>  
 [13] <http://www.moleg.go.kr/>  
 [14] 경찰청, 2013 국회제출자료, 서울: 경찰청, p.937, 2013.  
 [15] 이효민, 최영록, “경찰공권력 실추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3, p.199, 2008.  
 [16] 조현빈, “한국경찰의 개방형임용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2, pp.397-398, 2011.

### 저 자 소개

박 한 호(Han-Ho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법학사: 경찰행정전공)
- 200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석사)
- 2013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과(경찰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현재 극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경찰학회 사무총국에서 총무간사 직을 수행하고 있다.

<관심분야> : 경찰학, 경찰인사관리, 경찰조직관리, 범죄학, 형사정책, 민간경비, 교정학 등.